

양산 덕계 경동 스마트홈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신덕계로 34
- 공 급 규 모 : 지하1층 ~ 지상20층, 7개동 아파트 총 487세대 중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107세대
- 입 주 시 기 : 2014년 1월
- 공 급 대 상 : 아 래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국민 주택	59.9758	59A	59.9758	23.4417	83.4175	18.7870	102.2045	67
	59.8810	59B	59.8810	23.8250	83.7060	18.7572	102.4632	29
	84.3303	84	84.3303	26.5950	110.9253	26.4158	137.3411	11
	공 급 세 대 합 계							107

II 특별공급 배정내역

- 기관별 배정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85㎡ 이하 국민주택 10%범위 내 공급

구 분		59A	59B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2(1)	1	1	4(1)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0	0	1	
	중소기업 근로자	1	1	0	2	
	장애인	전체	3(1)	1	1	5(1)
		경상남도	1(1)	1	1	3(1)
합 계		7(2)	3	2	12(2)	

※ 상기내역은 분양승인 시 양산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예비추천세대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사항)

구분	일 정(예정)	비고
입주모집공고일	2021.03.12.(금)	양산시청 홈페이지 (www.yangsan.go.kr)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03.22.(월)	청약Home 인터넷청약 (www.applyhome.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1.03.30.(화)	청약Home 인터넷 홈페이지 (www.applyhome.com)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청약 자격 요건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양산시/경상남도</th> <th style="width: 25%;">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울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양산시/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구분	양산시/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신청 자격	<p>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특별공급 신청기관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p> <p>※ 2018.5.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만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분양사무실 10:00~14:00)가 가능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p>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청약Home)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주택(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포함)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청약, 공급 유형별로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계약체결 불가, 특별공급자격 상실,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신청자는 한국감정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관련 문의 전화번호 : 055-386-1788 								

※ 붙임 2

‘양산 덕계 경동스마트홈’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추천양식
(장애인)

※ 통상 주택평형은 세대별 공급면적(㎡)×0.3025로 산출(예:114.821×0.3025=34.7335 ≒ 34평)

■ 추천양식(대상자)

순번	타입	성명	당해 (양산)	기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1	59A						
2	59A						
3	59A						
4	59B						
5	84						

■ 추천양식(예비당첨자)

순번	타입	성명	당해 (양산)	기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1	59A						

※ 예비추천자 배정수량(40%)을 대상자와 구분하여 제출.